

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2]

게시에 필요한 사항(제11조 관련)

1. 게시물의 크기 및 모양

가. 한 면이 400mm 이상, 다른 한 면이 300mm 이상의 직사각형

나.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(견고딕체, 큰 글씨 60pt, 작은 글씨 40pt 이상)

2. 게시물의 재질

아크릴 등 변색되지 않는 재질

3. 게시 장소

영업장의 출입구 등 유홍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

4. 게시 문구의 내용

가. 성매매는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등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내용

나.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·채무관계는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무효라는 내용

다. 영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피해상담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

라. 여성긴급전화(국번없이 1366)

5. 게시물의 작성 예시

성매매는 불법입니다.

따라서,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·채무관계(선불금, 사채, 이자 등)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.(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)

- **성매매피해상담소(비밀보장, 신변보호, 현장출동, 의료·법률 서비스 제공):**
(해당 유홍주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상담소 연락처 기재)

- **여성긴급전화: 국번없이 1366(24시간 전국)**